개성공업지구 자동차관리규정

제정 2006-07-25 주체95(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76호로 채택)

제1장 일반규정

제1조(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에서 자동차의 등록과 기술검사, 통행질서를 엄격히 세워 자동차운행의 편의를 보장하고 교통사고를 미리 막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공업지구에서 자동차를 리용하는 범인, 개인에게 적용한다.

공업지구에서 자동차를 리용하는 다른 나라의 범인, 개인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공업지구밖에서의 자동차통행은 공화국의 도로교통법규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의 구분)

자동차에는 승용차, 버스, 화물차, 자동자전차, 특수차 같은 것이 속한다.

자동차의 세부적인 분류는 이 규정시행세칙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의 등록의무)

공업지구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동차의 등록은 의무적이다.

회의, 관광, 물자수송 같은 것을 목적으로 북측 또는 남측지역에서 공업지구에 출입하는 자동차는 등록을 하지 않는다.

자동차를 등록하는 사업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제5조(자동차의 번호판발급)

등록된 자동차에는 번호판을 준다. 림시로 리용하는 자동차, 등록수속중에 있는 자동차에는 림시표식판을 준다.

제6조(자동차의 기술검사기관)

공업지구에서 자동차의 기술검사는 자동차기술검사기관이 한다. 자동차기술검사기관은 자동차의 기술검사형식과 기준을 바로 정하여야 한다.

제7조(자동차의 운전자격)

공업지구에서 자동차의 운전은 공화국의 운전면허심사기관이 발굴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만이 한다.

남측 또는 다른 나라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는 그것을 자동차감독기관에 제기하여 교부받은 다음 자동차를 운전한다.

회의, 관광, 물자수송 같은 사유로 공업지구에 단기로 출입하거나 북과 남 해당 기관들사이에 합의하였을 경우에는 운저면허증을 교부받지 않고도 자동차를 운전할수 있다.

제8조(자동차등록증, 기술검사증사본의 제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번호판, 기술검사증을 발급한 공업지구관리기관과 자동차기술검사기관은 3일안으로 해당 문건의 사본을 자동차감독기관에 보낸다.

제9조(수수료의 납부)

자동차를 등록하였거나 기술검사를 받았거나 또는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았을 경우에는 정해진 수수료를 낸다.

자동차의 등록, 기술검사와 관련한 수수료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운전면허증의 교부와 관련한 수수료는 자동차감독기관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의 처리)

자동차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공업지구관리기관, 자동차감독기관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2장 자동차의 등록

제11조(등록의 구분)

자동차의 등록은 첫등록, 이동등록, 삭제등록으로 나누어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자동차의 등록신청서를 정확히 검토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자동차의 첫등록)

자동차의 첫등록은 공업지구에 새로 반입한 자동차에 대하여 한다.

첫등록을 하려는 자동차소유자는 해당 자동차를 공업지구에 들어온 날부터 7일안으로 첫등록신청서를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13조(자동차의 이동등록)

자동차의 이동등록은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경우에 한다.

자동차소유자는 공업지구에서 구입한 자동차를 15일, 증여받은 자동차를 20일, 상속받은 자동차를 3개월, 이밖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자동차에 대하여 15일안으로 자동차이동등록신청서를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14조(자동차등록신청서의 검토, 등록증발급)

자동차의 첫등록신청서 또는 이동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공업지구관리기관은 3일안으로 검토하고 해당 자동차를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자동차에는 등록증과 번호판을 발급한다.

제15조(자동차번호판의 봉인)

공업지구관리기관은 등록한 자동차에 번호판을 맡아주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승인없이 자동차번호판의 봉인을 뜯을 수 없다.

제16조(자동차의 림시표식판)

등록수속을 하거나 림시로 운행하는 자동차에는 림시표식판을 달아준다. 림시표식판의 유효기간은 15일간이다.

제17조(자동차의 등록삭제)

자동차의 등록을 삭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를 폐기시켰을 경우

2. 구입한 자동차를 생산자 또는 판매자에게 돌려 보냈을 경우

3. 충돌, 화제같은 사유로 자동차를 다시 리용할수 없게 되었을 경우

4. 자동차를 공업지구에서 완전히 내가려 할 경우

5. 이밖에 삭제등록을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8조(자동차등록의 삭제신청)

자동차소유자는 제17조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안으로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자동차등록삭제신청서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등록증과 번호판을 함께 바쳐야 한다.

제19조(등록을 삭제하였던 자동차의 등록)

삭제등록을 한 자동차의 등록은 제12조에 따른다.

제3장 자동차의 기술검사

제20조(기술검사의 구분)

자동차의 기술검사는 첫기술검사, 정기기술검사, 구조변경기술검사로 나누어 한다.

자동차기술검사기관은 자동차기술검사의 유효기간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기술검사를 제때에 하여야 한다.

제21조(자동차의 첫기술검사)

자동차의 첫기술검사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첫등록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 한다.

첫기술검사의 유효기간은 공업지구관리기관과 자동차기술검사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22조(자동차의 정기기술검사)

자동차의 정기기술검사는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이 만기되여 수리, 정비한 자동차에 대하여 한다.

자동차소유자는 검사유효기간이 자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심히 파손되어 수리복구한 자동차는 해당 기술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자동차의 구조변경기술검사)

자동차의 구조변경기술검사는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에 대하여 한다.

자동차소유자는 차종, 차형, 차체번호, 능력, 모양 같은 것이 달라진 자동차의 구조변경기술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자동차의 기술검사신청과 검사)

자동차의 기술검사를 받으려는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기술검사신청서를 자동차기술검사기관에 내야 한다.

자동차기술검사시관은 자동차기술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안으로 검사 날짜를 정하고 기술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25조(기술검사증의 발급)

자동차기술검사기관은 검사신청에 따르는 기술검사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기술검사에서 합격된 자동차에는 기술검사증을 발급하여 준다.

제26조(자동차의 장치물 설치)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에 장치물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표식을 하려 할 경우 자동차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자동차의 통행

제27조(교통지휘)

공업지구에서 교통지휘는 교통보안원이 한다. 자동차의 통행은 교통보안원의 교통지휘신호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자동차의 달림선)

자동차는 자동차도로로만 통행하여야 한다. 달림선이 표시된 도로에서는 정해진 달림선으로 통행하며 달림선이 표시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자동차의 속도와 종류, 차형, 통행목적에 따라 서로 양보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제29조(자동차의 저속통행)

자동차는 사귐길, 건늠길표식이 있는 곳, 정류소, 안전보임거리가 제한된 곳, 교통이 복잡한 곳으로 통행하거나 눈, 비, 안개, 먼지 같은것에 의하여 차의 운전에 지장을 받을 경우에는 저속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30조(자동차의 따라 앞서기)

자동차는 달림선이 없는 도로에서 앞선 자동차를 따라 앞서려 할 경우 정해진 신호를 하여야 한다. 신호를 받은 자동차는 따라 앞서려는 자동차에게 길을 내주어야 한다.

좁은 도로, 따라앞서기금지표식이 있는 구간의 도로, 굽인돌이, 사귐길, 건늠길, 정류소 다리, 굴길, 철길건늠길 같은곳에서는 따라앞서기를 할수 없다.

제31조(자동차의 어기기)

정사진 도로에서 자동차가 어길 경우 먼저 본 자동차 또는 내려오는 자동차는 길을 양보하여야 한다. 넓은 도로와 좁은 도로가 련결되는 도로에서 자동차가 어길 경우 넓은 도로에서 좁은 도로로 들어서려는 자동차는 길을 양보하여야 한다.

제32조(자동차의 정차와 주차장소)

멈추어서려는 자동차는 안전을 확인한 다음 도로의 변두리나 주차장에 세워야 한다. 다리, 사귐길, 철길건늠길, 시야가 제한된 경사길과 굽인돌이, 정차금지표식이 있는 곳, 주차표식이 없는 곳에는 자동차를 세우지 말아야 한다.

제33조(적재량과 규격의 초과금지, 짐의 포장)

자동차는 적재정량과 정해진 규격을 초과하여 짐을 ?지 말아야 한다. 바람에 날리거나 도로를 파손시키거나 보행자와 다른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줄수 있는 짐은 포장하여 신어야 한다.

제34조(인원을 태울수 없는 자동차)

자동부림식, 반끌림식, 짐함식, 짐틀식, 탕크식화물차, 련결차와 강재, 통나무, 폭발성물질, 방사성물질, 독성물질, 인화성물질같은 것을 신은 자동차는 적재함에 인원을 태우지 말아야 한다.

제35조(보행자의 통행)

자동차는 건늠길에서 보행자가 지나간 다음 통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행자는 도로를 빨리 건너가야 한다.

제36조(자동차의 사귐길통행)

교통보안원, 자동신호등이 있는 도로의 사귐길에서 자동차는 속도를 점차 낮추면서 가려는 방향의 신호등을 켜고 해당한 자리바꿈선에 들어선 다음 교통지휘신호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교통보안원과 자동신호등이 없는 도로의 사귐길에서는 가려는 방향의 신호등을 켜고 교통안전에 주의를 들리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제37조(자동차의 다리통행)

다리로 통행하는 자동차는 다리의 안전표식대로 짐을 ?고 통행하여야 한다. 어기기 힘든 다리에서는 먼저 들어선 자동차부터 통행하여야 한다.

제38조(자동차의 철길건늠길통행)

철길을 건너려는 자동차는 건늠길 10M 앞에 세우고 렬차가 통과하지 않는가를 확인하며 안전시호를 받은 다음 통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도를 변경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39조(자동차의 야간통행)

밤에 통행하는 자동차는 조명등을 켜고 보임거리를 보장하며 자동차가 서로 어길 경우 원거리등과 근거리등을 엿바꾸어 켜 다른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한다.

가로등이 있는 도로에서는 원거리등을 켜지 말아야 한다.

제40조(특수차의 통행)

구급차, 소방차, 도로시설관리차 같은 특수차는 해당 경보장치와 표식등, 표식기재를 사용하며 교통안전이 보장되는 조건에서 달림선에 표시한 속도보다 높은 속도 또는 낮은 속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41조(교통사고시 운전사의 임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사는 즉시 자동차감독기관과 보험회사에 알리고 사고현장을 보존하며 보행자와 다른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자동차에 갖추어야 할 물건)

통행하는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증, 기술검사증, 자동차3자책임보험가입확인증이 있어야 한다. 자동차운전사는 운전자격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43조(자동차의 통행금지사유)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 기술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이 지난 자동차, 자동차3자책임보험에 들지 않은 자동차와 조향장치, 제동장치, 조명장치, 신호장치가 불비한 자동차, 번호판, 림시표식판을 알아볼수 없는 자동차는 통행할 수 없다.

제5장 제제및 신소

제44조(벌금과 부과)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행위에 따르는 벌금의 부과기준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45조(자동차의 억류)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동차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7일까지 억류 시킬 수 있다.

제46조(추방)

이 규정을 어긴 행위의 정상이 엄중할 경우에는 책임있는자 또는 해당 자동차를 공업지구에서 내보낼수 있다.

제47조(신소와 처리기일)

자동차의 등록, 기술검사, 통행, 제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 자동차기술검사시관, 자동차감독기관과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신소할수 있다.

신소를 받은 기관은 15일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